

의안번호	제 181 호
의결년월일	1993. 3. 7.
의결사항	가결

발의자	양응빈 의원외 3인
제출년월일	1993. 3. 1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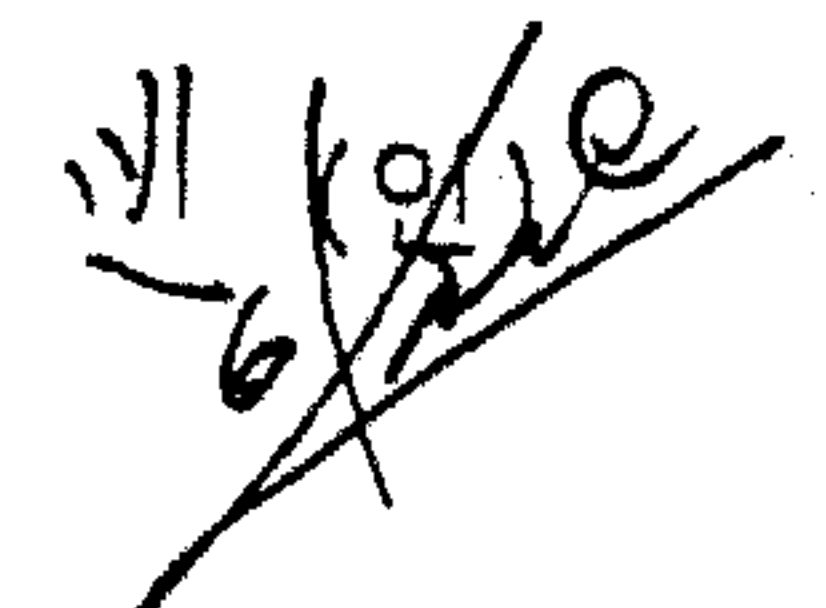
보은군의회 제21회(임시회)회기결정의건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보은군의회 제21회 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

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
의한 보은군의회 제21회(임시회) 회기결정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
의하여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불 임 : 안 건 1 부. 끝.

발 의 자 : 양 승 백 

(찬 성 의 원 서 명 : 불임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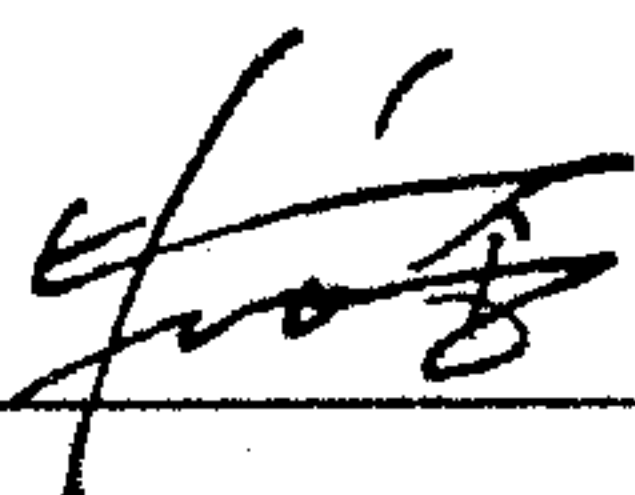
1. 제 안 설 명

제21회 보은군의회(임시회) 회기를 93년3월17일부터 3월19일 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함.

2. 제 안 이 유

- ◇ 제21회 임시회에서는 93년 군정업무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여 의회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
- ◇ 3월17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21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군정질문을 위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, 군정질문은 편의상 군청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기획실,문화공보실,내무과,새마을과,재무과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며,
- ◇ 3월18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사회과,환경보호과,가정복지과,산업과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며,
- ◇ 3월19일 제3차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지역경제과,산림과,건설과,도시과,민방위과,보건소,농촌지도소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삼승.산외면장관사 및 부속사철거 승인신청안을 심의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3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함.

의 안 찬 성 의 원 서 명

성 명	서 명	(인)
자 海 鐘		
자 盛 雄		
자 明 宇	